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박사학위논문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목표이익의 달성과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최수영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목표이익의 달성과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확 열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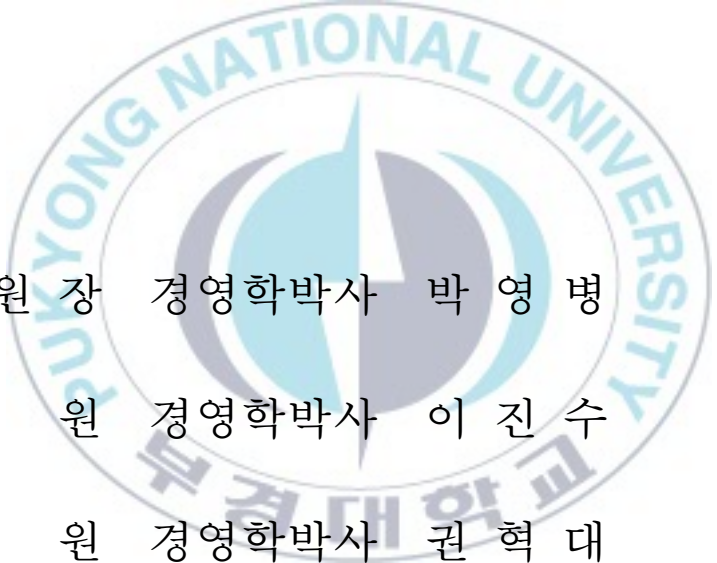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최 수 영

최수영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27일



위 원 장 경영학박사 박 영 병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이 진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권 혁 대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최 상 문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확 열 (인)

< 차 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1절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5
제2절 법인세율 인하	16
제3절 목표이익	22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27
제3장 연구설계	29
제1절 연구가설	29
제2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37
제3절 표본선정	50
제4장 실증분석	52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52
제2절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58
제3절 법인세율 인하와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66
제4절 목표이익과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74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표 차례〉

[표 1]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추이	16
[표 2]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51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54
[표 4] 회계선택, 법인세율 인하, 목표이익 및 조세부담의 상관관계	57
[표 5]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60
[표 6] 재량적발생액(코타리)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61
[표 7]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와 조세부담의 관계	64
[표 8]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와 조세부담의 관계	65
[표 9] 법인세율 인하,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68
[표 10] 법인세율 인하, 재량적발생액(코타리)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69
[표 11] 법인세율 인하,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와 조세부담의 관계	72
[표 12] 법인세율 인하,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와 조세부담의 관계	73
[표 13] 목표이익,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76
[표 14] 목표이익, 재량적발생액(코타리)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77
[표 15] 목표이익,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와 조세부담의 관계	80
[표 15] 목표이익,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와 조세부담의 관계	81

<그림 차례>

[그림 1] 회계선택, 법인세율 인하, 목표이익 및 조세부담의 선행연구	27
[그림 2] 가설 경로도	37



The Effect of Accounting Choice on the Tax Burden of Corporate
: Focusing on the Achievement of Target Earning
and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Soo Young Cho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choice and tax burden focusing on the achievement of target earning and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at (1) Does accounting choice of corporate affect on its tax burden? (2) Does accounting choice under the corporate tax rate by government effect on the tax burden of corporate? (3) Does accounting choice for achieving target earning influence which kind of affect to tax burden of corporate?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on Korea stock market and KOSDAQ that reported annual financial statement and excluding financial firms over period from 2008 to 2013. Finally, this study used 7,383 firm-year data as the sample. To evaluate each of hypothesis empirically, the sample is composed of measurement through the KIS-VALUE database itself by NICE Information Service Co., Ltd and regression equation used KIS-VALUE data covering the time period 2008 through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When firms uses the earning management by discretionary accruals as accounting choice, there is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the relation between earning management by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ir tax burden. It means that taxable incomes calculated by reported earnings is decreased and then its tax burden is dropped down when firm makes downward adjustment of profits. (2)When firms uses conservative accounting of accumulative non-current accruals as accounting choice, ther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the relation between conservative accounting of accumulative non-current accruals and their tax burden. It means that tax burden is decreased when firm uses conservative accounting such like accumulative non-current accruals reflected feature of conservatism accounting. (3)Under the external figure of the reduction corporate tax rate by government, the earning manage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is insignificant coefficient with tax burden. But ther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on tax burden when firm uses conservative accounting. It means that firms prefer to using conservative accounting for profit postponement at just before tax rate reduction. As firm uses conservative accounting, it try to decrease tax burden under this circumstance. (4)Under the internal set-up of target earnings' achievement, earning management by discretionary accruals and earning per stock price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on tax burden. It means that firm makes downward adjustment of profits to achieve its target earnings and it additionally takes the increase of tax burden caused by earning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both side of earning management by discretionary accruals and conservative accounting

together as accounting choice affect on the tax burden of corporate. Second, this study find out that firm prefers to using conservative accounting to manage earnings under tax rate reduction by government as it try to get the period effect at just before tax rate reduction. Third, this study verified that firm uses both side of earning management by discretionary accruals and conservative accounting for increasing profits and then additionally takes tax burden through this proces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혐의와 관련하여 일련의 조사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2014. 6. 12일자)에 따르면 구글, 애플, IBM 및 스타벅스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합법적인 수단과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각 기업의 유럽본부를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1. 13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각국의 조세정책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산정된 세금부과액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고, 영국 재무부는 영국 국세청(HRMC) 산하, 세금회피 추적부서를 배정하고 7천파운드 이상의 지원금까지 배정한다고 선언하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상기의 사례들은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만이 아니다. 최근 조세부담 혹은 조세회피와 관련된 일련의 자료와 연구들을 보면, 상기 기사처럼 기업들은 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하거나 조세회피행위를 통해서 이익이 사내에 유보되는 혜택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상황과 같이 조세혜택과 감면, 또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이 일관되지 못함으로써, 조세당국이 추구하는 조세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조세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이 부족한 부분의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부족한 조세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세율인상

이 검토될 수도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개적인 접근이 어려워서, 기업의 조세부담 또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이론연구, 설문조사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세부담의 대용변수들이 측정되고 그러한 대용변수들을 사용한 조세부담 관련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Desai et al. 2006 ; Dyreng et al. 2008, Dhaliwal et al. 2011). 기업의 조세정책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에 기업의 이익관리 관점에서 볼 때, 효익이 더 크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재의 관점의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데, 기업의 경영성과는 회계이익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리고, 세전이익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세비용은 산정되기에 세전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는 종국에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적 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일련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조세부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배구조와 조세부담, 이익관리와 조세부담, 조세부담(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등 조세부담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측정치도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이익을 기반으로 세무보고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과세소득에 준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결정되는 양 회계의 상충성을 인식하고서, 기업이 각각의 환경과 조건에서 최적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회계선택을 하는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회계처리 방법이라고 선택하는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한다. 회계이익이든 과세소득이든 최적의 회계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이익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회계선택의 측정변수로는 기존에 많이 연구한 재량적발생액과 많이 다루어 지지 않은 보수적 회계처리를 모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의 인하라는 외부적 요인과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로는 세율인하 직전연도와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구분하였고, 목표이익은 당기에 순이익을 보고한 여부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조세부담이라는 종속변수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한 조세부담액(Tax Burden)과 조세부담 대응치로 많이 적용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Book-Tax-Difference (BTD)잔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여기에 법인세율 인하와 목표이익 달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할 경우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회계적 선택으로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의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기업 내부적 상황 하에서, 기업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재무적 자료는 (주)나이스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한 자료는 정량적 데이터이고,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기 이전에 종속변수인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BTD 대용치와 주요 설명(독립)변수인 재량적발생액은 모형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조세부담의 종속변수, 재량적발생액 등의 회계선택이라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상호 연관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함에 따라, Baron and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0.0을 통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인하라는 조건 하에서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선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법인세율 인하 및 목표이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제2장에서 설명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등을 구축한다. 제 4장에서는 모형의 실증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1. 조세부담

가. 조세부담의 개념

조세부담은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과세대상 소득을 조세부담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과 관련된 현행 규정들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3개의 수익항목과 매출원가, 판매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비용의 5개의 비용항목 그리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 5가지 이익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의 소득 또는 수익을 나타내는 항목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계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항목을 법인의 조세부담력, 즉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규정하는 데에서 어려운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정윤택 2004).

법인의 조세부담은 ‘법인세부담액’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세비용 등 명세서’에 나타난 부담세액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에 부가되어 계산되는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한편, 조세부담의 대용치로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적용되는 조세회피 개념을 살펴보면,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납세자가 특정 소득에 대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행위이다. 조세회피행위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합법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로 구분 가능한데, 전자를 절세라고 하고, 후자를 탈세라고 한다. 합법적인 절세 행동을 조세회피(tax avoidance)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를 탈세(tax evasion)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김지범·박상연 2013). 조세회피행위는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세금을 개별 기업에 잔존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서 많은 파생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 간에도 조세대응 능력 차이를 가져와서 공평과세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재무보고 이익인 세후 순이익의 증가와 세금납부에 따른 현금유출을 억제시켜 보다 많은 현금이 기업내부에 잔존하게 함으로써 기업내부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보다 적은 조세부담액 그리고 보다 많은 조세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절세로서의 조세회피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이지만, 위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납세당국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회피에 해당되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기업과 납세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인 상황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대체로 조세회피를 세전이익 및 현금흐름 단위당 나타나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Dyrenge et al. 2008)로 정의하고 있다(도경분

2013).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은 명세서에 나타난 부담세액을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조세부담의 대응치인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절세로서 명시적 세금감소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회계선택

가. 이익조정

이익조정 (earnings management)은 사적인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기업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Shipper 1989)으로, 투자자나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하는 것(Healy and Wahlen 1999)으로 정의된다.

이익조정을 하는 유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익조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인,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이익유연화 가설(Income Smoothing Hypothesis)이다. 이익이 극심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경영자는 너무 높거나 낮은 이익을 평균화하여 안정된 이익흐름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경영자보상가설(management compensation hypothesis)이다. 회계수치가 계약의 근거라는 실증회계학적 사고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바탕으로 경영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경영성과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선택을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기업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는 정치적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이다. 정부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거나,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선택을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조정은 경영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무이익보고라는 유인에 기반을 두어 수행됨을 알 수 있다(박성각 2014).

이익조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과 실제이익조정이 있다.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발생액을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정현상을 검증해 왔다. Jones(1991)의 존스모형과 Dechow et al.(1995)의 수정존스모형 및 Kotharie et al.(2005)의 기업성과를 통제한 수정존스모형으로 발생액을 측정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경영자가 GAAP 회계기준 하에서 지출이나 매출활동을 조정하고 재량적 비용지출을 줄이며 자본적 투자를 증감하는 등 실질적 이익조정수단을 사용하면서도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연구보고들이(Graham et al. 2005 ; Roychowdhury 2006)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사적의도에 의하여 보고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조정하는 협의의 이익조정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이익조정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것을 채택하였다. 즉, 기업의 회계선택의 변수 중, 하나로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 사용하고자 한다.

나. 보수적 회계처리

다양한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회계 상의 보수주의(conservatism)이다. 보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기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수익은 가능한 늦게 인식하고 비용은 가능한 조속히 인식하며 자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는 반면 부채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Watt and

Zimmerman 1986)되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보수주의에 대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정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보수적 회계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성에도 불구하고 '비밀적립금의 창출, 과도한 충당부채의 계상, 고의적인 자산 및 수익의 과소평가 등은 재무제표의 중립성을 상실시켜 신뢰를 줄 수 없으므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해 주의를 하도록 부연하고 있다.¹⁾

보수주의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 주장들이 있다. 첫째, 부채계약이 관계의 관점으로, 채권가격이 채무기업의 가치가 감소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옵션가치의 속성 상,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보수주의 회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채권자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수주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 보수계약의 관점으로, 경영자의 보수가 회계이익에 연계될 때, 경영자의 낙관주의 또는 경영자에게 유리한 정보비대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비용가설의 영향으로, 경영자나 감사인집단에 대한 소송의 증가로 경영자를 포함한 회계 관련자들이 보수주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²⁾

보수주의는 악재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적 보수주의와 사후적 보수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전적 보수주의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악재를 미리 대비하고 재무상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순자산을 적게 계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적 보수주의는 호재 인식은 이연하지만 악재는 즉시 인식함으로써 순자산을 작게 계상하는 것이다. 결국 보수주의는 순자

1) 권수영 외(2010),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서울, 신영사, p 422

2) 김정재, (2011), 재무회계이론, 서울, 신영사, p. 274

산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에 비해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Feltham and Ohlson 1995). 예를 들면, 사전적 보수주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을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사후적 보수주의는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해당된다(강내철·박성환 2007).

본 연구에서는 회계처리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경제적 손실은 조속히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은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것을 보수적 회계처리의 기본개념으로 정하고,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계상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기업의 회계선택 변수 중 나머지 다른 하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회계선택과 조세부담의 선행연구

과세소득은 과세의 안정성, 행정의 편리성, 납세자의 편의, 중복계산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회계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양회계의 차이를 가감조정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회계정책은 과세소득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회계이익을 이연하면 과세소득도 이연되고 회계이익을 미리 인식하면 과세소득도 미리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조세부담은 이익수준에 비례한다.

세법은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납세자가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이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이연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과세소득을 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실제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 되고 있다(강내철 · 박성환 2007).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기 즉 법인세최소화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백원석 · 최관(1999)의 연구는 법인세최소화동기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일반화시켜 연구하였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계약관련 이익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법인세 추가 부담이라는 비용을 동시에 평가하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만약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부담이 경영자의 보상증가, 부채계약 위반가능성, 정치비용절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현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을 낮추는 쪽으로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법인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동(2002)의 연구는 여러 가지 조세혜택제도의 적용으로 법인세비용인 유효세율이 법정세율인 한계세율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우 즉 한계세율에 의한 납부세액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적은 조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영자는 공격적인 회계처리나 이익조정으로 보고이익을 높이기보다는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를 선택할 유인을 가지고, 예상된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의 부담이 낮아진다면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위준복 · 김문태(2005)의 연구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세율은 재무보고이익에 세무조정

이 가미된 사업보고서의 법인세 부담액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조세부담액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인세 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 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옥 · 배길수(2006)의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 조정이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제조업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의 크기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비교하였고, 상장 및 비상장기업의 특성 및 부채비율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특성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법인세비용 및 법인세부담액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수적 회계처리가 기업이 법인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보수적 회계처리를 경영자의 재량이라기보다는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내철 · 박성환(2007)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보수주의 회계선택은 소득발생을 이연하는 회계선택이라는 점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그 효과가 같다. 그러나 전자는 회계선택의 성격이 지속적이지만 후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구분하였다. 이득과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인식하는 보수주의 회계 관행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조세비용의 현재 가치와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높은 수익성으로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은 보수적 회계처리를 선택할 동기가 강하다고 추론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회계선택의 결정은 조세부담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비선형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추정곡선은 우하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보수주의 회계선택은 높은 조세부담 및 소액의 흑자보고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손익성과가 소액의 흑자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박승식 · 황명철(2007)의 연구는 재량적발생과 조세혜택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각각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경영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더 많이 고려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자들이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양 변수가 모두 증가하여 양(+)의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나, 회계이익의 증가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조세부담의 증가하게 되고, 조세부담의 감소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회계이익이 감소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경영자사 재량적 발생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현우(2007)의 연구는 유효법인세변동액이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에 대한 발견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은 발생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업현금흐름은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발생액 중에서도 재량적인 발생액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조정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변동액이 발생액관련 이익조정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이익조정측정치들에 비해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을 발견하는 데에 추가적인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효법인세변동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이익조정측정치와 발생액관련 이익조정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하고도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 발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태완·노준화(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였을 때,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상장 및 비상장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라도 외감법에 따라 감사받은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비금융업으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재량적발생액은 법인세부담액과 유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나 법인세 비용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시적 차이의 조정에 영향을 주어 미래에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연법인세가 도입된 경우 보고할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정옥·배길수(2009)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수주의와 이익조정간의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특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같은 개념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익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동시에 보수주의 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보수성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추가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광욱(2010)은 기업이 회계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과세소득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①한계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의 차이에 따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②기업의 소유구조가 집중화되

는 경우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 및 ③외부감사 품질이 과세소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선택에 대한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조세부담 그리고 집중화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은 세무보고이익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한 회계선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의 조정을 통해 하향 보고되는 재무보고로 말미암아 증가하는 비조세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조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선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같은 회계선택 성향은 외부 감사품질에 의해 견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각(2014)의 연구는 법인세 부담과 전략적 회계선택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 부담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의 ‘부호’ 뿐만이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통하여 법인세 부담의 설명관계를 규명한 결과에서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은 법인세 부담에 양(+)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이익관리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익관리의 크기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제2절 법인세율 인하

1. 법인세율

법인세(Corporate Tax)은 법인이 당기 회계연도에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를 의미한다.³⁾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1949년 11월 도입 당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일반법인은 35%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법인이 증가하고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인세율은 많은 변화와 개편을 거친다. 1982년에는 법인을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으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서 법인세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1999년부터는 공공법정도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투자활성화와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오고 있다(윤태화·심현욱 2008).

[표 1]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추이

	2005. 1. 1 後	2008. 12. 26	2009 기간 中	2012. 1. 1 後
과세표준 구간	1 억원	2 억원		
세율(최저/최고)	13% / 25%	11% / 25%	11% / 22%	10% / 20%

정부는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상기와 같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이익의 기간귀속을 변경하여 법인세부담을 최

3) 강경태(2013), 세법개론, 서울, 지혜의 샘, p. 401

소화하고자 하는 유인(incentive)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Scholes et al. 1992) 미국의 경우, 1986년 세법개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2년 동안 법인세율이 46%에서 34%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미국의 기업들이 회계이익을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서 인하 이후연도로 이연시키는지 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들(Scholes et al. 1992 : Guenther 1994)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이익을 차기 이후로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은 세금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재무보고비용 같은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이 커지기에 세금과 비 세금비용은 서로 상충하게 된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두 가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하리라 본다(손기근 외 2010).

2.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부담의 선행연구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법인이 다양한 회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조세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외연구의 경우, Scholes et al.(1992)는 미국정부가 1986년 세법개정(Tax Reform Act of 1986: 이하 TRA 86으로 표기)에 따라 2년의 기간동안 법인세율을 46%에서 34%로 경감한 조세개혁기간에 미국의 기업들이 회계이익을 인화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이연시켰는지의 여부와 이익을 이연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항목 중 어느 것을 사용하였는지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자들이 세율인하기간으로 이익을 이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용 항목보다는 수익 항목을 이용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표본을 매출액 크기로 5분위로 나누어서 이익이연을 검토한 결과, 상위 3개분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에서 이익이연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보고이익에 더 민감하여 세

무계획에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Guenther(1994)는 미국의 TRA 84의 세법개정을 계기로, 경영자들이 유동발생액(current accruals)을 이용하여 세율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이익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경영자에 의한 재무보고이익의 이연은 세금비용의 감소와 비 세금비용의 증가를 동시에 수반함을 명시하면서 비 세금비용이 기업의 횡단면적 차이(: 결산 월, 정치적 비용, 부채비율, 경영자 지분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에 의해서 이익조정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했다. 분석결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정치적비용의 대용치인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세율인하와 상관없이 발생액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Lopez et al.(1998)은 Guenther(1994)의 연구를 확장하였는데, TRA 84에 따라 경영자의 법인세부담 최소화행위가 세금비용과 비 세금비용인 재무보고비용의 상충에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Wilkie(1992)의 연구에서 제시된 조세혜택(tax sibsidy)측정치를 이용하여 조세혜택이 큰 기업은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수행한 기업으로 보면서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라 재량적발생액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조세혜택이 큰 기업이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법인세율 인하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면,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의 이익을 세율인하가 적용되는 차기로 이연하는 이익 하향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박춘래·김성민(1996)은 정부가 1994년에서 1996년까지 3년에 걸쳐 2%씩 법인세율 인하한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

여 경영자들이 법인세율 인하 전·후시점에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분석은 이익관리가설, 기업규모가설, 부채계약가설, 경영자지분가설 및 수익이연가설의 초점에서 각각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와 상관없이 당기 순이익의 상승폭이 클 때, 이에 반응하여 이익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상의 순이익을 낮추는 이익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들은 수익항목을 이용하여 이익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승묘(2002)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여부를 측정하였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보다는 인하 직후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한 결과, 4가지 대체적인 재량적발생액 측정치를 사용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율인하 직전연도(1993~1995년)의 재량적발생액이 세율인하 직후연도(1996년)보다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기업들이 세율인하에 따라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할 것이라는 추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보고했다.

김경호·박종일(2003)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비금융업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과 기타 결산법인을 구분한 자료를 표본으로 하고 재량적발생액으로 이익조정을 측정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를 보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을 더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영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 행위를 하였으며, 조세혜택이 큰 기업들이 세율인하 직전연도에서 재량적발생액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음을 보고

했다.

정윤택(2004)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과 조세공평성에 관한 관계를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비 금융업 상장기업으로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세부담의 경감을 세율인하 직전연도와 세율인하 직후연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연승민·최원욱(2008)은 2005년 법인세 인하가 사전 공지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상장기업 중,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서 세율인하 직후연도로 이익을 이연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지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조세회피 측정치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은 법인세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회계이익 대비 과세소득을 감소시켰고, 과세소득의 감소분 중에서는 재량적 항목들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고, 재량적 항목 중에서도 순수한 과세소득 감소분인 준비금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손기근 외(2010)은 법인세율 인하라는 경제적 사건에 대응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태와 기업의 재무보고비용이 이익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가설 중에서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이익조정여부를 검토한 분석을 보면, 법인세의 추가인하가 예정된 2008년의 재량적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세용(2010)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한다는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인세율 인

하라는 조세유인에 따라 보수주의 회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 금융업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인 2001년과 2004년에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혜 외(2014)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의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들 중, 경영자 보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연도에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주된 유인 중의 하나가 경영자가 법인세율 인하 해당연도에 채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킴으로 자신의 보상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정수진 외(2014)은 정부에 의한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지 확인하고자 보수주의 회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비 금융업의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Basu(1997)의 측정모형을 포함한 4가지 보수주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의 보수주의 회계가 강화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가 고지된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이익을 하향조정하여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하는 것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3절 목표이익

1. 목표이익

경영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목표로 한 이익인, 목표이익(target earnings)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발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②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의 재량적 비용지출을 삭감하거나 ③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매출을 조정하거나 ④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실물활동의 조정을 통한 방법, ⑤ 법인세비용(tax expense)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⑤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대해 예측치 조정(expectation management)을 하여 이익예측치를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예측치 하향유도(forecast guidance)의 방법 등이 있다(김정교 외 2011).

발생주의(accrual-basis) 가정에 의해 산출된 회계이익은 다양한 추정과 가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다양한 유인에 기반을 두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이익목표는 적자회피, 과거와 동일한 분기이익 그리고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등이 있다. 경영자가 재량적발생액이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목표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시장에서 ① 더 높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가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Bartov et al. 2002) ② 고객,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평판을 향상시켜 유리한 계약조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Burgstahler and Dichev 1997) ③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제고(Graham et al. 2005)해주며 유리한 위치를 선점(Matsumoto 2002)하게 해준다. 아울러 ④ 경영자의 보상문제(Matsunaga and Park

2001) 및 ⑤ 부채비용 위반과 관련된 자본비용 증가의 위험도 감소 (Watts and Zimmerman 1990)시키기 때문이다.

2. 목표이익과 관련된 선행연구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발생주의를 이용한 경우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Bartov(1993)은 경영자가 손실회피와 부채계약조항 준수를 위해 고정자산의 처분시기를 조정함을 증명하였고, Graham et al.(2005)는 CF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경영자의 80%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R&D, 광고선전비 및 수선유지비 등 재량적 지출을 축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Burgstahler and Eames(2006)은 목표이익을 미달성한 기업보다 간신히 달성하거나 약간 초과달성한 기업이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빈번 하게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Roychowdhury(2006)은 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실제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이익조정을 정의하면서, 비정상 재량적 비용, 비정상 제조원가, 비정상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지홍 외(2008)의 연구는 1999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재량적 비용 및 비정상 제조원가 등 다양한 실물 활동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정교 외 (2011)은 기업의 경영자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어떠한 이익조정 수단을 이용하며, 각 수단의 이용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과 비 제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입수 가능한 기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측치 하향유도, 재량적발생액을 주로 이용하였고 계정재분류도 일부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손실회피와 이익감소회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량적발생액과 일부의 실제이익조정수단을 사용함을 검증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익조정수단을 이용하여 목표이익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이익조정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 법인세와 관련한 이익조정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 연구로서, Dhaliwal et al.(2004)은 이익조정 전의 이익이 3분기 말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로 측정한 목표이익이 미달된 경우, 경영자는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다. Gleason and Mills(2006)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한 기업이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법인세비용의 감소를 이익조정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Cook et al.(2008)은 Dhaliwal et al.(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자문서비스와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목표이익을 미달한 기업 중 세무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많이 지급한 기업일수록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연구로서 박종일·전규안(2009)는 Dhaliwal et al.(2004)의 연구를 확장하여 2000년에서 200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이익을 공시하기 이전에 이익조정 전 이익(당기의 연간 세전이익 및 3분기까지의 주당 순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목표이익(3분기 말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미달된 기업들이 4분기에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의 여부를 분석

하였다.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들이 3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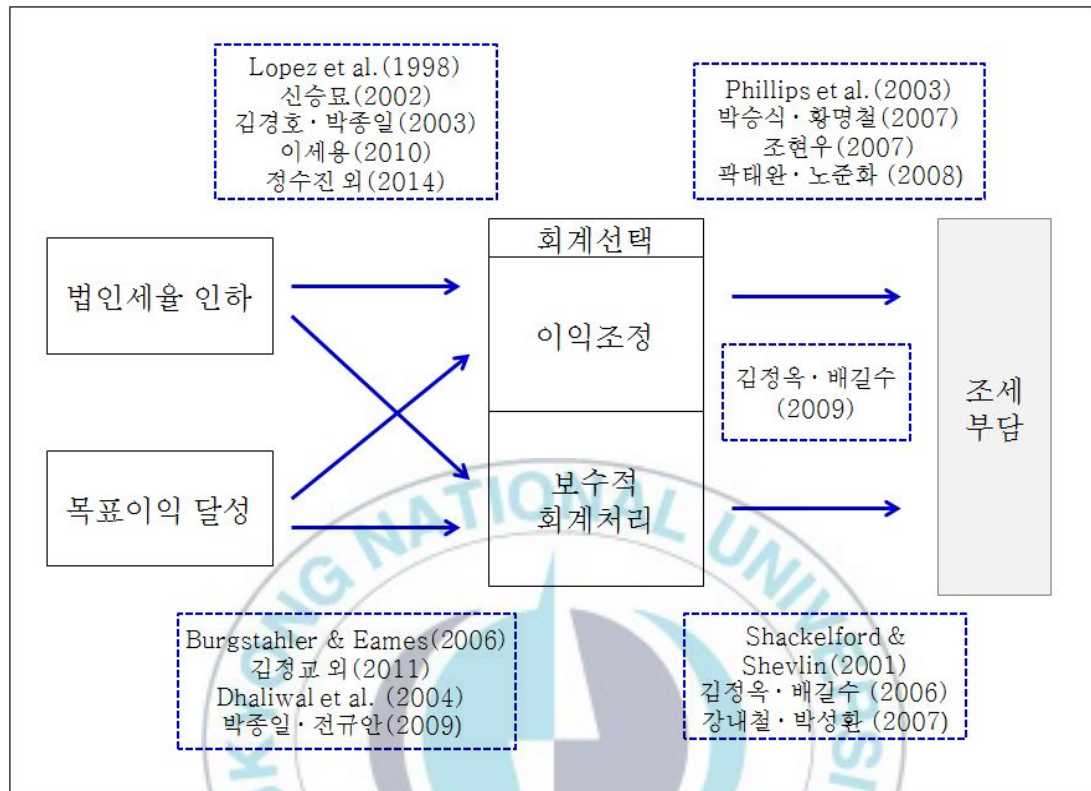
한편, 재무 분석가는 정보제공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사이에서 정보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이익예측치와 기업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 분석가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이외에도 거시 경제적 정보 등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평가에 반영하기에 이들의 이익예측치는 예측정확성이 우수하고 기업의 보고이익이 이들의 예측치를 달성하면 평가 프리미엄(valuation premium)이 존재한다(Bartov et al. 2002). 그러나 보고이익이 예측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서(Skinner and Sloan 2002) 기업들은 중요한 목표이익으로 삼고 있다(김정교 외 2011). 목표이익으로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고자 이익조정을 수행한 것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tsumoto(2002)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목표이익 달성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자는 이익예측치 하향유도와 발생액이익조정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경우 이익충격(earnings shock)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조정보다는 예측치 하향유도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McVay(2006)은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한 기업이 대하여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보유주식을 처분하면서까지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송인만 외(2004)의 연구는 Bur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자가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고자 얼마나 널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순이익이 0에 약간 미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적자규모가 상당한 기업도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흑자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이 영업현금흐름과 발생

액 모두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에 김성혜 외(2014)는 목표이익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이익조정과 그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185명의 재무분석가가 1표 이상 행사한 168개 기업 중에서 비 금융업과 12월 결산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성과조정의 재량적발생액과 실물이익조정의 계수 및 재무분석가가 평가한 기업의 재무정보품질 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재무분석가들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이 약간 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재무분석가가 인식하는 재무정보의 품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통한 기업의 이익조정은 재무분석가가 인식하는 재무정보의 품질과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목표이익의 달성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 회계선택, 법인세율 인하, 목표이익 및 조세부담의 선행연구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본 연구는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 및 법인세율의 인하와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할 경우에 기업의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조세전략을 결정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기업의 회계적 처리방법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량적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검증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들에 의한 보수적

회계처리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량적발생액에 의한 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는지를 검증해 본 점이다.

둘째,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법인세율의 인하라는 요인과 목표이익의 달성이란 요인이 경영자에 의한 회계선택과 조세부담간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목표이익의 달성이 경영자에 의한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본 점이다.

셋째, 기업의 회계선택이 기업의 조세부담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연구대상을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함께 고려하여 본 점이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가설

1.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가. 이익조정과 조세부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보고목적이 다르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주주, 채권자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고 세무회계의 목적은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주의를 실현하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충당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세소득은 과세의 안정성, 행정의 편리성, 납세자의 편의, 중복계산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회계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양회계의 차이를 가감 조정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회계정책은 과세소득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회계이익을 이연하면 과세소득도 이연되고 회계이익을 미리 인식하면 과세소득도 미리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조세부담은 이익수준에 비례한다(강내철·박성환 2007).

세법은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납세자가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이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이연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실제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 되고 있다

(Lopez et al. 1998 : Desai and Dharmapala 2006 : 백원선 · 최관 1999 : 김경호 · 박종일 2003 : 위준복 · 김문태 2005).

Lopez et al. (1998)은 법인세율인하 전 · 후 기간에 법인세부담을 줄이고자하는 동기가 강한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세율인하 직전에 있어 조세부담이 적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재량발생을 더 낮추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김경호 · 박종일(2003)의 연구는 법인세율인하 직전연도에서 재량적 발생을 더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준복 · 김문태(2005)의 연구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 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법인세 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기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보고이익에 준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조세부담액을 낮추려는 회계선택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이 회계선택, 그 중에서도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여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여 [가설 1]의 [가설 1-1]을 도출한다.

[가설 1] 기업의 회계선택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부담

보수적 회계처리는 소득발생을 지연하는 회계선택이라는 점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그 효과가 같다. 그러나 전자는 회계선택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후자는 일시적으로 행해진다. 이익과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관행은 높은 이익을 달성하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조세비용의 현재가치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보수적 회계처리는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악재에 대비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순자산을 적게 계상되도록 한다 (Ohlson 1995). 즉, 호재 인식은 지연하는 반면 악재 인식을 그 즉시 시행함으로써 순자산을 적게 계상한다. 결국, 보수적 회계는 순자산의 장부 가치를 시장가치에 비해 과소계상하는 것이다(문상혁 외 2006).

강내철(2006)의 연구는 기업의 이익분포가 변형되는 것을 재무부고이익의 적자회피 이익조정 이외에 보수주의 회계처리에서 찾았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이익분포의 변형과 보수주의 회계처리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업의 소액 흑자보고는 적자회피의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강내철 · 박성환(2007)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보수적 회계선택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보수적 회계선택의 결정은 조세부담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보수적 회계처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업이 높은 조세부담 및 소액의 흑자보고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보면,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은 순자산의 조기상각 등을 통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과소 계상함

으로써 조세부담액을 낮추려는 회계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낮추려고 기업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여 [가설 1]의 [가설 1-2]를 도출한다.

[가설 1] 기업의 회계선택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법인세율 인하와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가. 법인세율 인하와 이익조정 및 조세부담

기업은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세무보고 목적으로 과세소득을 하향조정할 유인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익의 하향조정 유인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의 인하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기간이다. 법인세율 인하 전후 연도에 기업의 이익관리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나, 세무자료는 비공개 자료인 관계로, 선행연구들에서는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의 대용치로 보고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세율 인하연도 전·후에 이익이연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Guenther 1994 : Lopez et al. 1998 : 김경호·박종일 2003 : 연승민·최원욱 2008 : 손기근 외 2010)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는 과세표준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율 2억 원까지는 13%에서 11%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였다.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점진적으로 2% 또는 3%의 법인세

을을 인하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이익을 이연 조정할 유인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사전공지 될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 없이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비세금비용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연승민·최원욱 2008). 법인세 최소화의 시도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으로 측정될 수 있고, 법인세인하가 사전 공지되어 확정되어 있다면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을 감소시켜 이익을 낮추는 회계조정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는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여 [가설 2]의 [가설 2-1]을 도출한다.

[가설 2]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의 회계선택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 법인세율 인하와 보수적 회계처리 및 조세부담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다. 즉 법인세율 인하가 예상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세율인하 이전 연도에서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함으로써 전체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법인세부담을 절감하는 것이다(백원선·최관 1999 ; 이세용 2011).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이익과 손실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회계이익이 작아지게 되고,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적으로 인식한 이익과 손실이 세율인하 해당연도의 과세소득에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인하된 법인

세율의 적용으로 기업은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된다(정수진 외 2014). 손실은 조속히 인식하고 이익은 수익은 가능한 느리게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가 법인세율 인하의 시행이 예상될 때, 기업의 경영자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손실은 조속히 인식하고 이익은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함으로써 인하된 세율의 혜택을 누리는 조세경감의 결과를 본 연구의 연구기간의 세율인하 시기에서도 적용되는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가설 2]의 [가설 2-1]을 도출한다.

[가설 2]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의 회계선택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목표이익과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가. 목표이익과 이익조정 및 조세부담

기업이 목표이익달성을 위해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 하는 동기를 보면, ① 장기적인 조세부담의 절감하기 위해, ②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③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 ④ 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목표이익달성 유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를 유도할 수 있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는 기업이 순이익을 감소할 때나 순손실을 보고할 때에 이익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기업의 8~12%가 이익조정을 하고 순손실을 보고하게 될 기업의 30~44%가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urgsrahler and Eames(2003)는 목표이익을 간신히 달성하거나 약간 초과달성한 기업이, 목표이익을 미달성한 기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액 등의 이익관리수단 및 이익예측치 하향유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Matsumoto(2002)는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발생액의 이익관리와 이익 예측치의 하향유도를 이용함을 입증하였다. 전성빈 외(2012)는 국내기업의 경영자 113명을 대상으로 재무보고 형태와 이익조정의 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영자들은 영업이익을 중요 성과지표로 생각했고, 적자회피, 과거의 동일분기 이익 및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치를 중요한 목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연구개발비 등의 재량적 비용지출 이외의 이익조정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영자들이 실제 발생액과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이 대외적인 설문조사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세전략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가설 3]의 [가설 3-1]을 도출한다.

[가설 3] 목표이익의 달성에 따른 회계선택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목표이익의 달성에 따른 이익조정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나. 목표이익과 보수적 회계 및 조세부담

보수적인 회계를 선택하는 기업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이 적게 표시되는 회계처리를 선택한다. 보수주의는 유·무형의 자산의 내용연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자산을 조기에 상각한다. 이러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결과 누적비유동발생액(:비유동영업순자산 non-current net operating assest)은 과소 표시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경영자는 조기상각을 통해 비유동영업순자산을 과소계상 하지만(강내철·박성환 2007) 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해야하는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보수적 회계처리는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가설 3]의 [가설 3-2]를 도출한다.

[가설 3] 목표이익의 달성에 따른 회계선택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1] 목표이익의 달성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설경로도



제2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1. 연구모형

가. [가설 1]의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상기 제 1절 연구가설에서 논의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들을 제시할 것이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이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주는 효과가 다를 것이다(위준복 · 김문태 205). 소득발생을 이연하는 회계선택

이라는 점에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그 효과가 같다. 그러나 전자는 회계선택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후자는 일시적으로 행해진다. 회계선택으로서의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 중, 우선 첫 번째로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이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1)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보수적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2)와 같다.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DA2)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 식 (1)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ConsAcc: E/P, NCA)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 식 (2)

여기에서,

TaxBD : 조세부담 대응치

- 1) 법인세부담액(TaxBD)
- 2) 조세회피 측정치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

AccChoice : 회계선택

- 1) **DA** :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

- ① DA1 : 수정 Jones모형 (Dechow et al. 1995)
- ② DA2 : 기업성과(ROA)를 통제한 수정 Jones모형 (Kotharie et al. 2005)

- 2) **ConsAcc** : 보수적 회계처리

- ① 이익률 (E/P= 당기 순이익/ 전기 순자산 시장가치)

② 누적비유동발생액 (=NCA: 비유동영업순자산)

$$= ([\text{비유동영업자산} - \text{비유동영업부채}] / \text{평균 총자산})$$

CONTR : 통제변수

- 1) **SIZE** : 총자산을 자연로그한 값
- 2) **LEV** : 부채비율 (=부채 / 총자산)
- 3) **CFO**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 기초 총 자산)
- 4) **ROA** :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 순이익 / 기초 총자산)
- 5) **AGE** : t년도 기업연령(설립연수 기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
- 6) $\sum YD$: 연도더미
- 7) $\sum ID$: 산업더미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을 자연로그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기에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해기간의 순이익을 낮게 보고하도록 이익관리를 한다(최관·김문철 2003). 기업규모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부채비율(LEV)는 당기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실증회계이론(positive accounting theory)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 경우, 부채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감시로 인해 경영자들이 가능한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회계처리 방법을 선호한다(고종권 2003).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기에, 부채비율이 기업의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영업활동현금흐름(CFO)는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영업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것이다(최동

춘·서정록 2013). 영업현금흐름이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총자산 순이익률(ROA)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전기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기업의 조세부담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산출되므로 총자산 순이익률(ROA)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최동춘·서정록 2013)으로 보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업연령(AGE)은 설립연도로부터 당기에 이르는 기업의 설립연수로 산출하였다. 기업연령도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규모 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나. [가설 2]의 연구모형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세무보고 목적으로 과세소득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의 인하가 적용하는 기간에 기업이 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커진다.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법인세율의 인하가 사전 공지될 경우 회계이익의 감소 없이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연승민·최원욱 2008). 법인세율의 인하가 사전 공지되어 확정되었다면,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회계적 선택을 통해 이익을 낮추는 회계조정을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체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의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3)이다. 아울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할 개연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2]의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4)이다.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DA2) + \beta_2 TaxRD \\ + \beta_3 (DA1, DA2 \times TaxRD)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 식 (3)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ConsAcc : E/P, NCA) + \beta_2 TaxRD \\ + \beta_3 (E/P, NCA \times TaxRD)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 식 (4)

여기에서,

TaxRD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이면 1, 세율인하 해당연도이면 0)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식 (1)과 식 (2)와 같다.

다. [가설 3]의 연구모형

경영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목표이익(target earning)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의 증가, 법인세비용(tax expense)의 감소, 그리고 채무 분석가의 이익예측치(expectation management)의 하향유도(forecast guidance)등의 방법이 있다(김정교 외 2011). 목표이익 중에서도 손실회피 및 이익감소회피를 이루고자 이익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정도도 함께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목표이익달성을 위해 재량적발생액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5)와 같다. 그리고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상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조정할 경우,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6)과 같다.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DA2) + \beta_2 TGE + \beta_3 (DA1, DA2 \times TGE) \\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quad \text{----- 식 (5)}$$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ConsAcc : E/P, NCA) + \beta_2 TGE \\ + \beta_3 (E/P, NCA \times TGE)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 \text{----- 식 (6)}$$

여기에서,

TGE : 목표이익 달성(: 손실회피= 당기에 순이익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식 (1)과 식 (2)와 같다.

2. 변수의 측정

가. 조세부담의 측정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관련된 조세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대용변수를 설정해서 조세부담을 측정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조세부담 측정변수로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의 재량적인 부분(Desai and Dharmapala (2006)), 기업의 조세혜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Wilkie and Limberg 1993), 전통적인 조세부담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 누적유효법인세율(Dyrenge et al.(2008))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측정치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방법이 조세부담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측정치 간에 상관성이 높음을 증명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조세부담 측정치의 신뢰성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반영하지 못하는 이연법인세대차와 실제로 현금을 수반하여 지출되는 법인세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으므로 강내철·박성환(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① 법인세부담액을 자산규모(평균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조세부담액(TaxBD), 그리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부담액의 경감여부의 결과를 측정하는 ② Desai and Dharmapala의 LTD 잔차를 포함한 두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고 각 측정치가 다른 변수들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조세부담 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의 부담금액을 알고자, 강내철·박성환(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부담액을 자산규모(평균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조세부담액(TaxBD)을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세전이익이 음(-)이거나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일 경우 그 의미가 왜곡된다. 세전이익이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란 사실은 조세부담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은 세전이익에 상관없이 높게 산출될 수 있다. 특히 세전이익이 0에 가까울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순을 지닌 유효법인세율보다는 법인세부담액을 조세부담의 측정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법인세부담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자산 규모로 표준화 하였다. 조세부담액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TaxBD_{i,t} = \frac{\text{법인세부담액}_{i,t}}{\text{평균총자산}_{i,t}}$$

여기에서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감 ±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D 잔차(이하 DD의 BTD로 표기)를 조세부담 대응치로 사용하였다. DD의 BTD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BTD의 계산을 위해 법인세부담액을 법정세율로 환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였다(박승식 외 2006 : 전규안·김철환 2008). 본 논문의 조세회피는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종합적인 세무전략을 반영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의 식과같이 종속변수를 BTD로하고, 독립변수를 총 발생액으로 하여 산업별·연도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추정된 잔차를 조세회피측정치로 이용하였다. DD_BTД의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TД = \beta_1 TA + \epsilon$$

BTД : (법인세차감전이익 - 추정과세소득*) / 기초 총자산

TA : 총발생액/ 기초총자산

* 추정과세소득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

Desai and Dharmapala(2006)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서 이익조정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총발생액의 효과를 제거한 잔차를 조세회피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인 DD_BTД은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의 대응치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측정치에 (-1)을 곱하여 조세부담액(TaxBD)과 동일하게 조세부담을 해석할 수 있기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세부담 측정의 기본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포함된 조세부담액(TaxBD)를 기준으로 삼고, 조세회피(DD_BTD)는 조세부담의 대용치로서, 조세부담액(TaxBD)로 측정한 통계결과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고하고자 한다.

나. 회계선택의 측정

①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 DA)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정존스 모형(Dechow et al. 1995)와 기업성과를 통제한 수정존스 모형(Kotharie et al. 2005)을 사용하였다. 재량적발생액은 총 발생액(total accruals) 중,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재량적발생액은 총 발생액에서 비 재량적 발생액이 기대치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총 발생액은 당기 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비재량적발생액은 수정존스 모형과 기업성과(ROA)를 통제한 수정존스 모형으로 추정한다. 재량적발생액 추정 시, 산업-연도별 횡단면 분석을 함께 고려하였다.⁴⁾ 수정 존스 모형의 추정식은 식 (8)과 같다.

$$\frac{TA_t}{A_{t-1}} = \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 \epsilon \quad \text{식 (7)}$$

$$DA_t = \frac{TA_t}{A_{t-1}} - \left[\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right] \quad \text{식 (8)}$$

4) 산업-연도별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Kis-Value의 기업분류기준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농,어,임,광업과 하수폐기물처리,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을 하나의 산업군(기타)에 포괄하여 총 8개의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량적발생액을 산출하였다.

기업성과를 통제한 수정존스 모형은 식 (10)과 같다. 수정존스 모형과 기업성과 통제의 수정존스 모형을 통한 재량적발생액 산출에서 측정항목을 전기 총자산으로 나눈 것은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줄이기 위함이다(곽태완 · 노준화 2008)

$$\frac{TA_t}{A_{t-1}} = \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 \alpha_3 ROA_t + \epsilon \quad \text{식 (9)}$$

$$DA_t = \frac{TA_t}{A_{t-1}} - \left[\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 \alpha_3 ROA_t \right] \quad \text{----- 식 (10)}$$

여기에서

TA_t : t년도 총발생액 (t년도 당기순이익 - t년도 영업현금흐름)

A_{t-1} : t-1년도 총자산

ΔREV_t : t년도 매출액 변화분

ΔREC_t : t년도 매출채권 변화분

PPE_t : t년도 유형자산 (유형자산 - 토지 - 건설중인 자산)

ROA_t : t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②보수적 회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보수적 회계란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 계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이익과 순자산을 줄이는 회계선택이 있을 때, 주가가 회계처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순자산의 시장가치는 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커진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익률(당기 순이익/ 전기 순자산의 시장가치)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익률로 측정한 손익성과가 소액의 흑자로 보고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보수적 회계선택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의 첫번째 측정치로서의 이익률(E/P)의 측정은 당기 순이익을 전기 순자산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산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차대조표 상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순자산의 크기로 측정되는데 보수적 회계처리는 자산을 조기에 비용화하여 순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것이다.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결과 누적발생액은 과소 표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적 회계처리의 측정치는 누적비유동발생액(accumulative non-current accruals: NCA)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은 비유동영업순자산(non-current net operating assets)으로서, 비유동영업자산에서 비유동영업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비유동영업자산은 영업에 사용되는 장기성 자산으로서 영업활동규모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이 큰 기업이 체계적으로 조기상각을 통해 비유동영업순자산을 과소계상한다면 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강내철·박성환 2007). 그리하여 보수적 회계처리 여부의 2번째 측정치로서의 누적비유동발생액의 값을 사용하였다.

다. 법인세인하의 측정

정부는 1990년대부터 투자활성화와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보고이익을 증대시키고자하는 경영자는 이익의 귀속기간을 변경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Scholes et al. 1992 : 윤태화·심현욱 2008)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주도된 법인세율 인하가 경영자로 하여금 회계적 선택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어 중국에는 조세부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세율인하

가 사전공지된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이익을 감소시켜 세율인하가 적용되는 해당연도로 이연시킴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지 파악하고자, 이익을 이연시키고자하는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법인세율 인하의 측정은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이면 1, 법인세율 인하 해당연도이면 0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라. 목표이익 달성의 측정

이익관리의 유인은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대체로 손실회피와 부채계약사항 준수를 위해 고정자산 처분시기를 조정하고(Bartov 1993), 손실보고 회피를 위하여 생산량, 재고자산 매출액을 확대하는 이익조정을 하며(Burgstahler and Dichev 1997), 주가상승과 고용유지를 이유로(Matsunaga and Park 2001) 또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정상적 영업활동 측정치를 갖기도 한다(Gunny 2009). 안정적인 순이익의 시계열 흐름은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에 대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전기대비 이익감소회피의 목표 이익 달성여부가 매우 중요한 유인이 된다(김정교 외 201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표이익 달성여부의 기준으로 손실회피 즉, 당기에 순이익을 보고하였는지를 여부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마. 통제변수의 측정

기업규모(SIZE)는 전기 총자산에 자연로그 값을 취하였으며 규모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기업규모와 조세부담의 관계는 양(+) 또는 음(-)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부채비율(LEV)은 당기의 총 부채를 전기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는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영자는 조세부담(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것으로 본다. 부채비율과 조세부담의 관계는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CFO)은 현금흐름표 상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영업현금흐름이 큰 기업은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것이다. 영업현금흐름과 조세부담과의 관계에 양(+)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총자산 순이익률(ROA)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전기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보고이익을 산정하기에 총자산 순이익률이 높을 경우 조세부담이 높아지기에 경영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기에 조세부담과는 양(+)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기업연령(AGE)은 설립연도에서 당기까지의 연수로 측정하였다. 대체로 기업연령이 많을수록 기업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규모(SIZE)처럼 규모효과를 통제하고자 통제변수에 포함하였고 조세부담과의 관계는 양(+) 또는 음(-)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제 3절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년 동안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 1)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 2) 계속상장기업으로 결산 월이 12월인 비 금융업기업
- 3) 나이스신용평가(주)의 KIS-VALUE를 통해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과세소득 및 주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4) 자본잠식 기업 제외

12월 결산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은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금융업의 경우는 회계처리방법이나 계정과목 등이 일반 제조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이 없거나 분석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업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자본잠식기업의 경우 또한 기업의 자본구조의 특이성으로 연구결과에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그 이외에 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선택에 해당하는 변수, 통제변수 및 조세부담의 종속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자료 및 주가자료는 NICE 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KIS-VALUE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과 관련된 변수의 측정치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인 표본으로 7,383개(firm-years)의 기업-연도 수를 선정하여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표 2]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표 본 선 정 과 정	기업-연도 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상장기업으로서 결산 월이 12월인 총 표본 수	9,791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기업 제외	(272)
조세부담(회피) 측정치를 구할 수 없는 기업 및 조세부담액이 (-)인 기업 제외	(1,047)
이익률 측정 시, 전기 순자산 시장가치인, 전기 시가총액이 누락된 기업 제외	(1,018)
재량적발생액 ± 1.0 을 초과하는 기업 및 여타 변수의 극단치 제외	(71)
실제 검증에 이용한 최종표본 수	7,383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1. 기술통계량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표이다.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액(TaxBD)의 평균은 0.014, 중위수는 0.010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연구기간인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약 1.4%의 법인세를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통상 법인이 2.2~2.5% 정도의 법인세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조세부담액은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고려했다는 것과 2008년부터 연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누적효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유추해 본다.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Desia and Dharmapala(2006)의 BTD잔차(DD_BTД)의 평균은 -0.063이고 중위수는 -0.014이며 표준편차는 0.157이다. 조세회피의 최소·최대값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업마다 처한 재무적 환경이 다르기에 조세부담 최소화의 조세회피 통한 따른 현금의 사내유보 정도가 다른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경영자가 조세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회계적 처리방법 중, 재량적발생액(DA1, DA2)의 경우 수정존스 모형(Dechow et al. 1995: DA1)으로 측정시 평균이 -0.003이고 중위수가 0.000이며 기업성과(ROA)를 통제한 수정존스 모형(Kotharie et al. 2005: DA2)으로 측정

시 평균이 0.001이고 중위수가 0.000으로 재량적발생액은 평균과 중위수가 거의 유사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인 이익률(E/P)는 평균이 -0.012 이고, 중위수가 0.000이며 비유동영업순자산인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의 평균은 0.167 이고 중위수는 0.000 이다. 이익률(E/P)은 평균과 중위수가 유사한 분포를 이루나 누적비유동발생액(NCA)는 평균이 0.167 이고, 중위수가 0.000으로 차이가 나지만 표준편차 0.336 이내에서의 차이므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차이이다.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경영자는 보고이익과 연결된 이익을 조정하기보다는 비유동자산의 조정에 용이하게 접근함을 유추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TaxRD)의 경우는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목표이익(TGE)의 경우는 목표이익의 달성한 기업에 초점을 두어 관측하는 더미변수이기에 중위수와 평균의 분포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통제변수인 기업의 규모(SIZE)의 경우, 평균이 25.78 이고 중위수가 25.46으로 표준편차 1.45 이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수용할만한 수준이다. 부채비율(LEV)의 평균 0.359 으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35.9%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14.4%선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CFO)와 총자산 순이익률(ROA)의 평균이 각각 0.017, 0.006 이고 중위수가 모두 0.000으로 평균과 중위수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장기업 대부분이 설립이후 20년 이상되어 기업수명주기로 볼 때,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	
						Q1	Q3
TaxBD	.014	.010	.019	.000	.250	.000	.020
DD_BT D	-.063	-.014	.157	-.962	.946	-.094	.028
DA1	-.003	.000	.085	-1.000	1.000	.000	.000
DA2	.001	.000	.068	-1.000	1.000	.000	.000
E/P	-.012	.000	.282	-4.000	4.000	.000	.000
NCA	.167	.000	.336	-1.00	1.132	.000	.096
TGE	.75	1.00	.431	0	1	1.00	1.00
TaxRD	.46	0.00	.498	0	1	0.00	1.00
SIZE	25.788	25.469	1.455	22.000	33.000	25.000	26.316
LEV	0.359	0.144	0.417	0.000	2.000	0.000	0.840
CFO	0.017	0.000	0.074	-1.000	1.000	0.000	0.000
ROA	0.006	0.000	0.090	-1.153	1.000	0.000	0.000
AGE	27.11	24.00	16.24	1.00	116.00	13.09	38.00

변수의 정의

TaxBD : 조세부담 대응치

- 1) 법인세부담액(TaxBD)
- 2) 조세회피 측정치 (Desai and Dharmapala(2006)의 BT D 잔차)

AccChoice : 회계선택

- 1) **DA** :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

① DA1 : 수정 Jones모형 (Dechow et al. 1995)

② DA2 : 기업성과(ROA)를 통제한 수정 Jones모형 (Kotharie et al. 2005)

2) **ConsAcc** : 보수적 회계처리

① 이익률 ($E/P =$ 당기 순이익 / 전기 순자산 시장가치)

② 누적비유동발생액 (=NCA: 비유동영업순자산)

$$= ([\text{비유동영업자산} - \text{비유동영업부채}] / \text{평균 총자산})$$

CONTR : 통제변수

1) **SIZE** : 총자산을 자연로그한 값

2) **LEV** : 부채비율 (=부채 / 총자산)

3) **CFO**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 기초 총 자산)

4) **ROA** :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 순이익 / 기초 총자산)

5) **AGE** : t년도 기업연령(설립연수 기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

2. 상관관계

다음의 [표 4]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주된 관심변수인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측정치인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액(TaxBD)과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BTD잔차(이하 DD_BTД로 표기)에 대한 회계선택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량적발생액 중,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echow et al. 1995 : DA1)은 조세부담액과 DD_BTД에 대해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과를 통제한 수정존스모형(Kotharie et al. 2005 : DA2)(이하 Kotharie 모형으로 표기)는 조세부담액과는 비유의적이지만 DD_BTД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처리 측정의 이익률(E/P)는 조세부담액과 DD_BTД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유동영업순자산인 누적비유동발생액(NCA)는 조세부담액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DD_BTД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익률(E/P)의 경우 재무보고 이익인 순이익의 조정을 통한 조세경감을 파악하고자 하기에 양(+)의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은 비용 및 부채의 조기인식을 통해 자산상각의 정도인 조세경감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기에 음(-)이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미변수인 목표이익의 달성여부(TGE)는 조세부담액과 DD_BTД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고, 법인세율 인하(TaxRD)은 조세부담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DD_BTД 조세회피와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채비율(LEV)이 조세부담액과 DD_BTД에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 조세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 기업규모(SIZE),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 및 총자산의 순이익률(ROA.)는 조세부담액과 DD_BTД에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 중, 재량적발생액의 측정치인 수정존스 DA1과 코타리 DA2간의 0.615가 가장 높는데 이는 측정치가 유사한 두 변수의 특성 때문이며, 그 이외에 상관계수가 0.7이상을 상회하는 변수들이 없기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4] 회계선택, 법인세율 인하, 목표이익 및 조세부담의 상관관계

변수	TaxBD	DDBTD	DA1	DA2	E / P	NCA	TGE	TaxRD	SIZE	LEV	CFO	ROA	AGE
TaxBD	1												
DD-BTD	-.247**	1											
	.000												
DA1	.062**	.176**	1										
	.000	.000											
DA2	.010	.028*	.615**	1									
	.370	.016	0.000										
E / P	.113**	.210**	.236**	.024*	1								
	.000	.000	.000	.043									
NCA	-.100**	.053**	-.023*	-.018	.026*	1							
	.000	.000	.045	.114	.028								
TGE	.298**	.309**	.178**	.040**	.325**	-.032**	1						
	.000	.000	.000	.001	.000	.005							
TaxRD	.146**	-.496**	.009	.005	-.058**	-.134**	-.006	1					
	.000	.000	.548	.713	.000	.000	.667						
SIZE	.117**	.089**	.042**	-.003	.036**	.048**	.173**	-.014	1				
	.000	.000	.000	.798	.002	.000	.000	.348					
LEV	-.172**	-.104**	-.059**	-.011	-.134**	.133**	-.209**	.007	.169**	1			
	.000	.000	.000	.341	.000	.000	.000	.651	.000				
CFO	.192**	.038**	-.176**	-.316**	.182**	.064**	.166**	-.029	.009	-.020	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51	.431	.091			
R.OA	.247**	.185**	.415**	.045**	.394**	.012	.334**	-.020	.098**	-.080**	.353**	1	
	.000	.000	.000	.000	.000	.284	.000	.169	.000	.000	.000		
AGE	-.032**	.008	.018	-.007	-.012	-.021	.049**	-.028	.340**	.038**	-.055**	.009	1
	.006	.515	.122	.525	.303	.066	.000	.053	.000	.001	.000	.455	

** 주 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제2절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1. [가설 1-1]의 검증결과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회계정책은 과세소득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 조정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세법은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납세자가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과세소득을 줄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이익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익관리를 행하는 이유가 이익유연화, 경영자보상과의 연계, 정치적비용 등 여러 가지 유인에서 출발하더라도 경영자는 GAAP 회계기준 하에서 지출과 매출활동을 조정하고 재량적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자본적 투자를 증감하는 등의 실질적 이익관리수단을 사용하는 동시에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는 연구들 (Graham et al. 2005 ; Roychowdhury 2006)에 초점을 두어, 이익관리 측면에서 경영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재량적발생액이 조세부담의 최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수정존스 모형(DA1)과 기업성과를 통제한 수정존스 모형인 코타리 모형(DA2: 이하 코타리 모형이라고 표기)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5]과 [표 6]이다.

[표 5]에서 수정존스 모형에 의한 재량적발생액(DA1)이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량적발생액 (DA1)은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309(5.86)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F-값)은 228.6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형의 설명력(Adj-R²)은 30.2%에 이른다. [표 6]에

서 코타리 모형에 의한 재량적발생액(DA2)가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량적발생액(DA2)은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285(5.30)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F-값)은 227.70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30.1%의 모형 설명력(Adj-R²)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의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이 조세부담에 주는 영향을 검증한 통계결과를 보면, 결국 경영자는 회계선택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을 하향조정을 하면, 조세부담액(TaxBD)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조세경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아울러, [표 5]와 [표 6]에서의 상기의 두 가지 재량적발생액(DA1, DA2)이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1)은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389(3.2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 DA2의 경우,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036(0.28)으로 양(+)의 관계이지만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2)이 비유의적이지만 조세부담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가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을 조세부담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Đ)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들이 조세부담 측정치인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영업현금흐름(CFO)와 총자산의 순이익률(ROA.)이 높을수록 조세부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 DA1)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
DA1	+	0.0309(5.86)***	0.0389(3.27)***
SIZE	+/-	0.0010(4.42)***	-0.0002(-0.47)
LEV	-	-0.0039(-2.59)***	-0.0143(-4.19)***
CFO	+	0.0639(12.63)***	0.0881(7.87)***
ROA.	+	0.0371(7.57)***	0.0512(4.81)***
AGE	+/-	-0.0000(-1.40)	-0.0001(-1.48)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19	0.0863
F-value		228.68***	118.32***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6] 재량적발생액(코타리 DA2)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2)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A2	+	0.0285(5.30)	0.0036(0.28)
SIZE	+/-	0.0009(4.15)	-0.0003(-0.61)
LEV	-	-0.0043(-2.86)	-0.0146(-4.27)***
CFO	+	0.0626(11.96)	0.0602(5.07)***
ROA.	+	0.0500(14.76)	0.0790(10.35)***
AGE	+/-	-0.0000(-1.41)	-0.0001(-1.66)***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10	0.0850
F-value		227.70***	116.38***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1-1]의 검증결과는, 기업의 경영자가 회계선택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을 하향조정을 하면 조세부담액(TaxBD)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가설 1-2]의 검증결과

보수주의 회계선택은 소득발생을 지연하는 회계선택이라는 점에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효과가 같지만 회계선택의 속성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회계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추정이 필요한 경우 자산이나 수익을 낮게 인식하고 부채나 비용을 조속히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는 자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부채의 가치는 높게 평가(Watt and Zimmerman 1986)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익과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인식하는 보수주의 회계관행은 수익성이 높아 조세부담이 큰 기업의 경영자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선택할 동기가 강하다(강내철·박성환 2007). 그리하여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런 특성을 지닌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가설 1-2]를 설정하였으며, 보수적 회계처리 변수로 당기의 순이익을 전기의 순자산 시장가치로 표준화한 이익률(E/P)과 비유동영업자산에서 비유동영업부채를 차감한 비유동영업순자산을 평균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을 분석한 결과가 [표 7]과 [표 8]이다.

[표 7]과 [표 8]에서 보수적 회계처리의 변수인 이익률(E/P)과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이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률(E/P)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를 보면, 이익률은 당기의 순이익을 전기 총자산의 시장가치(전기 시가총액)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기에, 보수적 회계처리의 특성 상, 수익인 당기 순이익을 낮게 인식하여 과소 계상하였다면 이익률이 낮아지고 낮아진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세소득도 낮아져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양(+)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검증하였다. [표 7]에서 이익률(E/P)을 보면, 이익률(E/P)의 비표준화계수값(t -값)이 $-0.0016(-2.51)$ 로 1% 수준에서 유의

적이지만, 부호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대부호 (+)와 반대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수적 회계처리인 누적비유동발생액(NCA)과 조세부담간의 관계를 보면,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은 보수적 회계처리의 특성 상, 부채를 조기에 과다 계상하였다면, 비유동영업순자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수익과 자산으로 산정되는 과세소득이 낮아지고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음(-)의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검증하였다. [표 8]에서 누적비유동발생액(NCA)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112(-7.43)$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누적비유동발생액(NCA)와 조세부담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모형의 적합도(F-값)은 231.9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30.5%의 모형 설명력(Adj-R²)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에 주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업의 경영자가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여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2]는 자산상각의 성격이 강한 보수적 회계처리인 누적비유동발생액의 경우만 유의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표 7]과 [표 8]에서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Đ) 종속변수로 측정된 조세부담과 보수적 회계처리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한 통계결과를 보면, 이익률(E/P)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159(9.96)$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익률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F-값)은 87.82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14.2%의 모형 설명력(Adj-R²)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누적비유동발생액(NCA)과 조세회피간의 관계에서, 누적비유동발생액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213(-5.34)$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누적비유동발생액(NCA)과 조세회피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F-값)은 78.8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연구모형의 설명력(Adj-R²)은 12.9% 이다. 조세부담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Д)로 측정 한 경우, 경영자가 이익률(E/P)과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을 사용하여 이익과 자산을 하향 조정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세회피(DD_BTД)로 측정 한 조세부담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7]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 E/P)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ConsAcc : E/P)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Д
E/P	+	-0.0016(-2.51)***	0.0159(9.96)***
SIZE	+/-	0.0008(3.62)***	0.0030(5.39)***
LEV	-	-0.00341(-2.26)**	0.0052(1.37)
CFO	+	0.03849 (14.64)***	-0.0804(-12.04)***
ROA	+	0.0598(22.04)***	-0.0368(-5.34)***
AGE	+/-	-0.0000(-2.17)**	0.0001(2.81)***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2978	0.1416
F-value		224.25***	87.82***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8]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 NCA)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ConsAcc: NCA) + \beta_2 CONTR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
NCA	-	-0.0112(-7.43)***	-0.0213(-5.34)***
SIZE	+/-	0.0009(4.09)***	0.0021(3.75)***
LEV	-	-0.0014(-0.92)	0.0146(3.71)***
CFO	+	0.0407(15.48)***	-0.0771(-11.39)***
ROA	+	0.0615(23.52)***	-0.0536(-7.98)***
AGE	+/-	-0.0000(-2.29)**	0.0001(1.45)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50	0.1288
F-value		231.98***	78.84***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1-2]의 검증결과는, 기업의 경영자가 회계선택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할 때, 이익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고이익을 직접 하향조정하는 방법보다는 누적비유동발생액처럼 부채나 비용의 조기인식 또는 자산의 상각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액(TaxBD)에 영향을 주어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3절 법인세율 인하와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1. [가설 2-1]의 검증결과

재무보고이익을 바탕으로 세무보고이익이 산정되기에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과세소득을 하향조정할 유인은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라는 요인이 작용할 기간에 더 크게 나타난다. 법인세율 인하가 사전 공지될 경우 보고이익의 하향조정 없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세금비용의 추가 없이 법인세를 최소화 할 수 있기에 법인세율 인하는 경영자에게 이익을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할 충분한 유인이 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양한 회계적 선택을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체로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수익, 유동발생액, 재량적발생액 등을 사용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이들을 하향조정하거나 감소시켜 이익을 이연한다(Guenther 1994 ; Lopez et al. 1998)는 보고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신승모 2002 ; 김경호 · 박종일 2003 ; 정윤택 2004 ; 손기근 외 2010). 법인세인하가 사전 공지되어 확정되었던 2008년 12월을 포함한 본 연구의 연구기간에 기업들이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회계선택으로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고 재량적발생액을 하향조정 하여 이익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영향을 주는지를 [가설 2-1]을 통해 검증한 결과가 [표 9]와 [표 10]이다.

[표 9]와 [표 10]은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TaxRD)에 재량적발생액(DA1, DA2)을 사용하여 이익을 이연시킴으로 조세부담액(TaxBD)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이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TaxRD)와

재량적발생액(DA1, DA2)의 상호작용변수를 통해 조세부담액(TaxBD)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9]에서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1)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은 0.0082(1.64)로 10% 수준에서 유의적이지만 실제부호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대부호 음(-)과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0]에서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2)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조세부담액(TaxBD) 관련성을 살펴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015(-0.28)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에 의해 법인세율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기업이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며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하는 조정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조세부담을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 D)의 측정한 분석결과를 보면,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1)과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상호작용변수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991(-7.73)이고,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2)과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상호작용변수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1836(-13.49)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를 조세부담액(TaxBD)로 측정한 경우와 조세회피(DD_BT D)로 측정한 경우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실제부호가 서로 매우 상이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액이 반영된 조세부담액(TaxBD)의 종속변수를 연구가설 검증의 기본으로 하기에 [가설 2-1]의 검증은 조세부담액(TaxBD)의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고 BT D에서 이익조정을 포함한 총발생

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조세회피(DD_BT D)로 측정 한 결
과는 [가설 2-1]의 지지 여부 자료로는 적용하지 않았다.

[표 9] 법인세율 인하,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 DA1)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 \beta_2 TaxRD + \beta_3 (DA1 \times TaxRD) \\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
DA1	+	0.0263(4.39)***	0.0262(1.71)*
TaxRD		0.0047(5.86)***	0.0189(9.18)***
DA1 × TaxRD	-	0.0082(1.64)*	-0.0991(-7.73)***
SIZE	+/-	0.0009(4.42)***	0.0020(3.64)***
LEV	-	-0.0039(-2.62)***	0.0105(2.76)***
CFO	+	0.0638(12.61)***	-0.1040(-8.04)***
ROA	+	0.0371(7.56)***	-0.0302(-2.41)**
AGE	+/-	-0.0000(-1.41)	0.0000(1.59)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22	0.1352
F-value		206.15***	75.07***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

[표 10] 법인세율 인하, 재량적발생액(코타리 DA2)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2) + \beta_2 TaxRD + \beta_3 (DA2 \times TaxRD) \\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Đ
DA2	+	0.0294 (4.71)***	0.1280 (8.13)***
TaxRD		0.0046 (5.70)***	0.0190 (9.36)***
DA2 × TaxRD		-0.0015 (-0.28)	-0.1836 (-13.49)***
SIZE	+/-	0.0009 (4.16)***	0.0022 (4.09)***
LEV	-	-0.0043 (-2.86)***	0.0088 (2.34)**
CFO	+	0.0626 (11.96)***	-0.0563 (-4.26)***
ROA	+	0.0500 (14.76)***	-0.0627 (-7.33)***
AGE	+/-	-0.0000 (-1.40)	0.0001 (2.04)**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09	0.1562
F-value		204.90***	88.72***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2-1]의 검증결과, 법인세율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보고이익과 연결된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가설 2-2]의 검증결과

법인세율 인하가 예상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세율인하 이전 연도에서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하여 전체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은 보수적 회계처리의 특성인 이익과 손실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회계이익은 적게 보고하고 세율인하 해당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경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되었을 때, 기업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을 [가설 2-2]를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11]과 [표 12] 이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연도에 기업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액(TaxBD)에 영향을 주는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1]에서 보수적 회계처리 변수인 이익률(E/P)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을 보면, $-0.0031(-2.73)$ 으로 1% 수준에서 조세부담액(TaxBD)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F-값)은 202.84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의 설명력도 30% 이다. [표 12]에서 보수적 회계처리의 또 다른 변수인, 누적비유동발생액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 비표준화

값($t-값$)을 보면, $-0.0072(-2.40)$ 으로 5% 수준에서 조세부담액(TaxBD)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도 209.57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30.6%의 모형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된 직전연도에 기업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회계이익을 하향조정하고 이것을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이연함으로써 해당연도에는 세율인하 적용으로 조세부담액(TaxBD)을 줄이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가 예정된 경우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표 11]과 [표 12]에서 종속변수가 조세회피(DD_BTĐ)로 측정된 경우, 이익률(E/P)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계수값($t-값$)이 $-0.0132(-4.52)$ 으로 조세부담과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조세부담액(TaxBD)로 측정된 이익률(E/P)과 법인세율 인하(TaxRD)의 통계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적비유동발생액(NCA)과 법인세율 인하의 상호작용변수 계수값($t-값$)이 $-0.0023(-0.29)$ 로 조세부담과 음(-)의 관계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의 검증결과,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하여 일시적 특성을 지닌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이익을 이연시키고 조세경감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법인세율 인하,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 E/P)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E/P) + \beta_2 TaxRD + \beta_3 (E/P \times TaxRD)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
E/P	+	-0.0001(-0.13)	0.02210 (10.52)***
TaxRD		0.0058(5.93)***	0.02522 (10.22)***
E/P × TaxRD	-	-0.0031(-2.73)***	-0.0132(-4.52)***
SIZE	+/-	0.0008(3.60)***	0.0030(5.36)***
LEV	-	-0.0035(-2.33)**	0.0048(1.27)
CFO	+	0.0385(14.65)***	-0.0804(-12.06)***
ROA	+	0.0597(22.01)***	-0.0372(-5.42)***
AGE	+/-	-0.0000(-2.15)**	0.0001(2.85)***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2987	0.1451
F-value		202.84***	81.40***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12] 법인세율 인하,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 NCA)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NCA) + \beta_2 TaxRD + \beta_3 (NCA \times TaxRD)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
NCA	—	-0.0081(-3.81)***	-0.0255(-4.70)***
TaxRD		0.0062(5.20)***	0.0160(5.26)***
E/P × TaxRD	—	-0.0072(-2.40)**	-0.0023(-0.29)
SIZE	+/-	0.0009(4.05)***	0.0021(3.76)***
LEV	—	-0.0014(-0.90)***	0.0145(3.70)***
CFO	+	0.0408(15.50)***	-0.0772(-11.40)***
ROA	+	0.0616(23.56)***	-0.0537(-7.99)***
AGE	+/-	-0.0001(-2.31)**	0.0001(1.45)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57	0.1289
F-value		209.57***	71.09***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제4절 목표이익과 회계선택 및 조세부담

1. [가설 3-1]의 검증결과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이익은 다양항 추정과 가정을 허용 하기에 경영자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관리(earning management)를 하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해당기업은 시장에서 주가의 극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유리한 계약조건, 투자자들의 신뢰성 제고, 경영자의 보상 문제 및 자본비용 증가의 위험도 감소 등 여러 장점들을 보유할 수 있기에 이익관리를 통해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충분하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목표이익의 달성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보상을 잘 알기에 여러 회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자들이 순손실이나 순이익 감소하게 될 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의 하향유도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이라는 회계선택을 한 경우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 3-1]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표 14] 이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경우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13]에서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1)과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 -값)이 0.0688(11.45)로 1% 수준에서 조세부담액(TaxBD)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F -값)는 205.6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모형 설명력도 32.2%

에 이른다. [표 14]에서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2)과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195(2.82)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의 적합도(F-값)는 188.2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 설명력도 30.3%에 이른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고된 회계이익의 증가로 인해 조세부담이 일정부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을 하며 이러한 회계조정이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경우 조세부담 대응치인 조세회피(DD_BT D)에 미치는 영향은 [표 13]과 [표 14]에 상호작용항 변수로 보고되어 있다. 즉,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1)과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이 0.0258(1.69)로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DA2)와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0.0872(5.07)로 1% 수준에서 조세회피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회피로 측정된 종속변수에서도, 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의 이익조정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수용할 것이라는 가설[3-1]이 지지되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표 13] 목표이익, 재량적발생액(수정존스 DA1)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1) + \beta_2 TGE + \beta_3 (DA1 \times TGE)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A1	+	-0.02002(-2.87)***	-0.0240(-1.36)
TGE		-0.0023(-2.45)**	-0.0390(-16.67)***
DA1 × TGE	+	0.0688(11.45)***	0.0258(1.69)*
SIZE	+/-	0.0012(5.52)***	0.0032(5.89)***
LEV	-	-0.0045(-3.06)***	0.0048(1.28)
CFO	+	0.0643(12.85)***	-0.0874(-6.89)***
ROA	+	0.0521(10.26)***	0.0257(2.00)**
AGE	+/-	-0.0000(-0.55)	0.0001(2.29)**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221	0.1743
F-value		205.66***	91.93 ***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14] 목표이익, 재량적발생액(코타리 DA2)의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DA2) + \beta_2 TGE + \beta_3 (DA2 \times TGE)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DA2	+	0.0129(1.67)*	-0.0495(-2.58)***
TGE		-0.0029(-3.12)***	-0.0412(-17.64)***
DA2×TGE	+	0.0195(2.82)***	0.0872(5.07)***
SIZE	+/-	0.0010(4.45)***	0.0032(5.86)***
LEV	-	-0.0047(-3.14)***	0.0041(1.09)
CFO	+	0.0623(11.93)***	-0.0669(-5.14)***
ROA	+	0.0564(14.71)***	0.0182(1.90)*
AGE	+/-	-0.0000(-1.25)	0.0001(2.52)**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30	0.1787
F-value		188.23***	94.70***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3-1]의 검증결과, 기업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상향조정된 이익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일정부분 증가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

2. [가설 3-2]의 검증결과

보수주의 회계는 경제적 효익의 사내유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자산을 조기에 상각한다. 또한 부채와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고 수익은 유입이 확실한 시점까지 연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이익을 달성이라는 기업의 경영정책 하에서 경영자들이 목표이익 달성을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가설 3-2]를 통해 검증한 결과가 [표 15]와 [표 16]이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회계선택을 하는 경우 조세부담액(TaxB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5]에서 이익률(E/P)과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208(7.44)으로 1% 수준에서 조세부담액과(TaxBD)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F-값)은 197.4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모형 설명력은 31.3%에 이른다. 다음으로, [표 16]에서 비유동영업자산에서 비유동영업부채를 차감하여 평균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누적비유동발생액(NCA)와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006(-0.15)으로 통계적으로 비유의하며 기대부호와 달리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통계결과를 보면, 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조세부담액이 다소 늘

어나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2]는 당기 순이익을 전기 총자산 시장가치로 이익률(E/P)로 측정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채의 인식으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는 형태의 보수적 회계처리 방법인 누적비유동발생액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경영조건 하에서는 조세부담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목표이익의 달성을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조세회피(DD_BTĐ) 종속변수의 경우에서도, 이익률(E/P)과 목표이익의 상호작용변수의 비표준화계수값(t-값)이 0.0313(5.35)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비유동발생액(NCA)와 목표이익(TGE)의 상호작용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하나 기대부호와 달리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서 종속변수 조세부담액(TaxBD)로 측정한 결과와 동일하다.

[가설 3-2]의 검증결과를 보면,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기업의 경영조건 하에서는 보수적 회계처리라 할지라도 이익을 반영한 보수적 회계처리를 사용하여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어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5] 목표이익, 보수적 회계처리(이익률 E/P)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E/P) + \beta_2 TGE + \beta_3 (E/P \times TGE)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
E/P	+	-0.0141(-9.90)***	0.0049(1.66)*
TGE		-0.0012(-1.26)	0.0435(20.67)***
E/P×TGE	+	0.0208(7.44)***	0.0313(5.35)***
SIZE	+/-	0.0010(4.53)***	-0.0019(-3.83)***
LEV	-	-0.0061(-4.09)***	-0.0069(-2.05)**
CFO	+	0.0350(13.36)***	0.0575(9.72)***
ROA	+	0.0750(22.83)***	-0.0117(-1.67)*
AGE	+/-	-0.0000(-2.30)**	-0.0001(-3.21)***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132	0.1495
F-value		197.40***	164.68***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16] 목표이익, 보수적 회계처리(누적비유동발생액 NCA)와 조세부담의 관계

$$TaxBurden = \beta_0 + \beta_1 AccChoice(NCA) + \beta_2 TGE + \beta_3 (NCA \times TGE) + \beta_4 CONRE + \sum YD + \sum ID + \epsilon$$

변 수	기대 부호	종 속 변 수 (Tax Burden)	
		(1) 조세부담액 TaxBD	(2) 조세회피 DD_BTD
NCA	-	-0.0110(-3.43)***	-0.0024(-0.29)
TGE		-0.0022(-1.52)	-0.0317(-8.55)***
NCA×TGE	+	-0.0006(-0.15)	-0.0235(-2.59)***
SIZE	+/-	0.0010(4.35)***	0.0031(5.67)***
LEV	-	-0.0017(-1.13)	0.0094(2.46)**
CFO	+	0.0406(15.39)***	-0.0785(-11.92)***
ROA	+	0.0659(21.05)***	0.0163(2.08)**
AGE	+/-	-0.0000(-2.23)**	0.0001(1.92)*
연도더미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Adj-R ²		0.3057	0.1799
F-value		190.64***	95.48***

주 1)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냄

주 2) ***는 0.01수준, **는 0.05수준, *는 0.10 수준에서 유의함

제5장 결 론

기업의 최종이익은 법인세부담의 시초가 되며 단순히 법인세부담 측면에서만 판단하자면 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무회계가 생산하는 회계이익은 세무당국만 활용하는 정보가 아니고 기업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들은 기업의 보고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회계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함으로써 발생되는 재무보고비용(financial reporting costs)을 부담하기보다는 보고이익의 증가유인에 매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비용 완화와 보고이익 간에는 상충관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할 때, 기업은 어떠한 회계선택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종속변수로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그리고 주요 설명변수로 기업의 회계선택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회계선택과 조세부담 간의 관계가 법인세를 인하라는 외부요인과 기업의 목표이익 달성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을 조세부담액(TaxBD)과 조세부담의 대용치인 Desai and Dharmapala(2006)의 LTD(DD_DTD)잔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회계선택은 수정존스 및 코타리 모형의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률(E/P)와 누적비유동발생액(NCA)의 보수적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회계선택과 조세부담의 관계가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TaxRD)와 기업내부의 경영정책인 목표이익의 달성(TGE)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자 하여 법인세율인하(TaxRD)는 세율인하 직전연도와 세율인하 해당연도로, 목표이익의 달성(TGE)은 당기에 순이익 보고 여부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을 사용하면 조세부담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자가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면 회계이익에 기초하여 산정된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 보수적 회계처리의 누적비유동 발생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부담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선택하는 보수적회계처리 방법 중에서도 부채와 비용의 조기 인식 및 자산의 적극적 상각이라는 보수주의 회계 특성이 더 부각된 누적비유동발생액을 사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셋째, 정부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은 조세부담에 비유의적이었으나 보수적 회계처리는 조세부담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인하 시점에 이익이연을 위하여 사용한 회계적 처리방법은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이 아니라 세율인하 직전이라는 기간적 효과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보수적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관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을 확인한 점이다.

넷째,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설정된 경우, 목표이익의 달성을 위해 기업의 경영자가 선택하는 회계처리방법은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 중에서도 이익이 반영된 이익률이 조세부담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자는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경제적 전제 하에서, 보수적 회계처리보다는 재량적발생액의 이익

조정을 통해 회계이익을 증대시키는 회계선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증대된 조세부담을 수용하고 있음을 검증한 점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 이외에 보수적 회계처리의 측면에서도 함께 검증해 본 점이다.

둘째,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법인세를 인하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이익관리의 목적으로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방법이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보다는 보수적 회계처리인 것을 확인한 점이다.

셋째, 목표이익의 달성이라는 기업 내부적 요인이 설정된 경우, 기업이 목표이익의 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회계처리를 재량적발생액의 이익조정 및 보수적회계처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검증했고 이 과정에서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한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을 측정함에 있어서 t 기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t 기의 회계측정치들만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서 조세부담의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한 점이다. 조세부담이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이 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의 측정을 누적한 측정치로 사용하여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수적 회계처리의 측정치로 사용한 변수의 제한성이다. 보수주의 회계를 사용한 여부를 좀 더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차후 연구에서 더 다양한 보수적 회계처리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BTD를 조세부담 대용치로 사

용하였는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 이익의 차이를 총발생액에서 차감하여 조세회피를 유추하는데, 이익조정을 포함하는 총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 대응치를 사용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태(2013), 세법개론, 서울, 지혜의샘
- 강내철(2006), 보수주의와 이익분포이 변형, 회계학연구, 제 31권 제4호:
p. 85-111
- 강내철·박성환(2007), 조세동기에 의한 보수주의 회계선택이 이익분포
변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p. 39-66
- 고종권(2003), 세금비용과 비조세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 28권 제 2호: p. 49-77
- 곽태완·노준화(2008), 재량적발생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 17권 제 3호: p. 1- 20
- 권수영 외(2010),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서울, 신영사
- 김경혜·이건·최경수(2014),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
영자 보상,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 2014권: p. 286-306
- 김경호·박종일(200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회계
학연구 제 28권 제 3호: p. 85-120
- 김성혜·이아영·전성빈(2014), 기업의 이익목표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과
한국재무분석가의 인식,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제1호:
p. 1-29
- 김정교·유순미·강정화(2011),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수단과 시
장반응,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6호: p. 3743- 3772
- 김정교·유순미(2012), 목표이익 달성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337-350
- 김정옥·배길수(2006),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적 유인, 세무학연구 제
23권 제 1호: p. 79-103

- 김정옥 · 배길수(2009), 보수주의와 발생액, 회계저널 제 18권 제 2호: p. 1-31
- 김정재(2011), 재무회계이론, 서울, 신영사
- 김지범 · 박상연(2013), 경영자 특성과 기업 지배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1호: p. 267-287
- 김지홍, 고재민, 고윤성(2008), 적자회피 및 이익 평준화를 위한 실제이익 조정 활동, 회계저널 제17호 제4호: p. 31-63
- 김진동(2002), 조세혜택과 기업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7집: p. 71-94
- 도경분(2013), 조세회피가 현금보유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상혁 · 박종국 · 신세나(2006), 정보지대칭성에 따른 보수주의의 차별적 인식, 회계학연구, 제 31권 제 3호: p. 215-242
- 박성각(2014),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략적 회계선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식 · 장지인 · 정길채 · 배성태(2006), 기업지배구조의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 24권 제 1호: p. 213-241
- 박승식 · 황명철(2007), 재량적발생액과 조세혜택의 상호작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19집, p.59-81
- 박영란 · 최원욱(2007),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경영연구, 제44권 제2호: p.163-180
- 박종국 · 홍영은 · 이은주(2007), 재량원가와 법인세 최소화 기업의 전략적 선택,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0호: p. 1-36
- 박종일 · 전규안(2009), 목표이익을 달성하기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p. 171-206

- 박춘래 · 김성민(1996), 법인세율 인하와 이익관리, 회계학연구 제 21권 제 4호: p. 143- 173
- 백원선 · 최관(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제 24권 제 1호: p. 115- 139
- 손기근 · 윤석만 · 최원석(2010), 법인세율 인하와 재무보고비용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1권 3호: p. 261-286
- 송인만 · 최신재(2001) 경영자의 전략적 회계선택: 회계변경과 재량적발생액의 선택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6권 제1호: p. 105-126
- 송인만 · 백원선 · 박현섭(2004),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p. 29-51
- 신승묘(2002)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회계이익의 조정여부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19권 제2호: p. 7-34
- 심상규(2012), 경영자 스톡옵션 부여 시, 목표이익이하의 경영성과 보고를 위한 이익조정,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4호: p. 237-258
- 심호석 · 강창수(2012), Beating Earning Benchmarks between Equity-Financing and Debt-Financing Firms, 국제회계연구, 42집: p. 123-142
- 연승민 · 최원욱(2008),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회피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경영연구, 제45권 제2호: p. 217-234
- 오광욱(2010),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순미(2012), 발생액 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감소회피 및 손실회피가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45집: p. 251-272
- 윤태화 · 심현욱(2008),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p.249-283

- 위준복·김문태(2005), 법인세부담완화를 위한 재량적발생액의 조정,
회계와 감사연구 제 42권 : p. 1-25
- 이세용(2010), 법인세율 인하와 보수주의,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p.
43-70
- 장지인·정준희(2011), 법인세율 인하와 세무조사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비용을 통한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1권 2호: p.1-22
- 전규안·김철환(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계산 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 9권 제 3호: p.
167-190
- 전병욱(2008)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분
석, 경영학연구, 37권 4호: p. 1125-1150
- 전성빈·권혜진·김명인·김성혜·이아영(2012), 한국 기업의 재무정보
보고행태: 상장기업 CFO 서베이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저널, 21집:
p. 97-132
- 정윤택(2004), 법인세율 인하가 조세부담과 조세공평에 미치는 영향, 세
무학연구 제 15집: p. 45-63
- 정수진·김진태·심충진(2014), 법인세율 인하가 보수주의와 법인세부담
액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6호: p. 979-996
- 조현우(2007) 유효법인세율변동액과 법인세부담을 고려한 이익조정, 세무
학연구 제 24권 제 1호: p. 81- 112
- 최관·김문철(2003), 이익조정과 이익조작 연구의 검토, 한국회계학회 특
별연구서
- 최동춘·서정록(2013),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제
18권 제 1호: p. 1-27

- 최수천 · 서란주(2004), 법인세율 인하 시, 세금비용과 비세금 비용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정기학술대회, 제15권: p. 77-99
- 최원욱 · 이현아(2012),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발생액 구성요소의 조정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2호: p.1290-1318
- Baron, R. M. and D. V.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 1173-1182
- Bartov, E.(1993), The Timing of Asset Sales an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68(4): p. 840-855
- Bartov, E., D. Givoly, & C. Hayn(2002), The rewards to meeting or beating earnings expectation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36(2): p. 173-204.
- Basu, S.(1997), The Conservation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4(Dec.): p. 3-37
- Burgstahler D. & I. Dichev(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 &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4: p. 99-126
- Burgstahler, D. and M. Eames(2003),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and Earnings Decreases : Are Analysts Foole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2): p. 253-294.

- Burgstahler, D., M. Eames(2006), "Management of Earnings and Analysts' Forecasts to Achieve Zero and Small Positive Earnings Surpris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ccounting*, 33: p. 633–652.
- Cook, K. A., G. R. Huston and T. C. Omer(2008), *Earnings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Tax Rates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Investmen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Working paper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 p. 193–225.
- Degeorge, F., J. Patel, and R. Zeckhauser(1999) "Earnings management to exceed thresholds", *Journal of Business*, 72(Jan.): p. 1–33
- Desai, M. A. and Dharmapala, D.(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p. 145–179
- Desai, M., A. Dyck and L. Zingales(2006),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3): p. 591–623
- Dhaliwal, D. S., C. A. Gleason and L. F. Mills(2004),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 Using Tax Expense to Meet Analyst' s Foreca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1(2): p. 431– 459
- Dhaliwal, D. S., et al.(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Working paper
- Dyreng, S., M. Hanlon and E. Maydew (2008), *Long-run Corporate*

-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p. 61–82
- Feltham, J. and J. Ohlson(1995), Valuation and Clean Surplus Accounting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Spring): p. 689–731
- Graham J. R., C. R. Harvey and S. Rajgopal(2005), "The Economic Implication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0: p. 3–73
- Gleason, C. A. and L. P. Mills(2006), Evidence of Differing Market Responses to Meeting or Beating Targets, Working paper
- Guenther, D. A. (1994),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 p. 230–243
- Gunny, K.(2009),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Using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and Future Performance: Evidence from Meeting Earnings Benchmarks, Working paper
- Healy, P. M. and Wahlen, J.M.(1999), A Review of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 for Standard Setting, Working paper
- Jones,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p. 193–228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p. 163–197
- Lopez, T., Regier, P., and Lee, T. (1998), Identifying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Around TRA 86 as a Function of

- Tax-Aggressive Behavi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p. 37-56
- Matsunaga, S., & C. Park(2001), "The effect of missing a quarterly earnings benchmark on the CEO's annual bonus," *The Accounting Review* 76: p. 312-332.
- Matsumoto, D.(2002), Management's incentives to avoid negative earning surprises, *The Accounting Review*, 77(3): p.483-514
- McVay, S.(2006), Earnings disclosures and Stockholder Lawsu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3(3): p. 249-282
- Ohlson, J.(1995),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Secur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p. 661-668
- Roychowdhury, S.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2, Issue 3; p. 335-370.
- Schipper, K. (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Vol. 3, Issue 4: p. 91-102
- Scholes, M. S., G. P. Wilson, and M. A. Wolfson(1992)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Supplement) : p. 161-185
- Skinner, D. J. and R. G. Sloan(2002), Earnings Surprises, Growth Expectations and Stock Returnsb or Don' t let an Earnings Torpedo Sink Your Portfolio,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7(2-3): 249-311

- Slemrod, J. (2004) The Economics of Corporate Tax Selfishness, National Tax Journal 57: p. 877–899
- Teoh, S., I. Welch, and T. J. Wong(1998), Earnings Management and the Post–issue Performance of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and Economics 50 : p. 63–99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Wilkie, P. J. (1992)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p. 97–116
- Wilkie, P. J. and S. T. Limberg(1993), Measuring Explicit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yers: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 p. 46–71